

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견

의안 번호	3-6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2. 11. 30.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☐ 제안이유

지방공기업법 개정 및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직원의 자격사유 개정과 이사회의 공무원 당연직 비상임 이사를 2인 이내로 변경코자 함

☐ 주요골자

- 임원중 당연직 비상임 이사 및 감사를 변경함(안 제9조)
 - 가. 시의 기획관리실장, 사회산업국장을 비상임 이사로 한다.
 - 나. 당연직 감사를 기획담당관으로 함.
- 공단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임원 및 직원의 자격사유를 정함(안 제14조)
 - 가. 임용당시 자격사유 해당시 당연 퇴직한다.
 - 나. 퇴직된 임원의 퇴직전 관여한 행위의 효력이 존속된다.

☐ 개정변경(안) : 별 첨

☐ 관련법령 발췌서 : 별 첨

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개정안

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제3항중 “총무국장, 사회산업국장, 건설국장”을 “기획관리실장, 사회산업국장”으로 하고, 동조 제4항중 “기획실장으로 당연직 감사로 할 수 있다”를 “기획담당관을 당연직 감사로 한다.”으로 한다.

제1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(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)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·직원이 될 수 없다.

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
2. 미성년자·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3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5.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6.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7. 공단과 거래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

③공단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.

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임원)①(생략) ②(생략) ③임원중 이사장과 이사1인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, 시의 <u>총무국장, 사회산업국장, 건설국장</u>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한다. 단, 상임이사는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경우에 두기로 한다. ④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,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<u>기획실장으로 당연직 감사로 할 수 있다.</u>	제9조(임원)①(현행과 같음) ②(현행과 같음) ③임원중 이사장과 이사1인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, 시의 <u>기획관리실장, 사회산업국장</u>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한다. 단, 상임이사는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경우에 두기로 한다. ④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,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<u>기획담당관을 당연직 감사로 한다.</u>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)①(생략)”	제14조(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) ①(현행과 같음)
1.(생략)	1.(현행과 같음)
2.금치산자, 한정치산자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	2.미성년자·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3.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	3.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4.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	4.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5.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	5.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6.공단과 거래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	6.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②(생략)	7.공단과 거래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
(신 설)	②(현행과 같음)
	③공단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.
(신 설)	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.